

인천환경공단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이용수칙 (골프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수칙은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골프장(이하“골프장”이라 한다.)내방고객(이하“이용객”이라 한다.)의 시설물 이용 및 경기진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수칙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모든 이용객은 명랑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 본 골프장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

- ① 본 수칙의 성립은 송도스포츠파크 온라인 예약 완료 및 프론트에서 입장자 접수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필하여 이용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 ② 입장절차 완료는 예약절차를 완료하여 승인을 받은 후 승인순으로 온라인결제 및 프론트에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제5조(수칙의 명시 및 효력)

- ① 본 수칙은 송도스포츠파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프론트 및 기타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이용객은 입장 수속과 함께 수칙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용객이 홈페이지 공지내용 및 현장 프론트에 비치되어 있는 본 수칙을 보지 않은 경우도 본 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본 수칙에 대하여 입장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구두로 설명한 사항도 이용수칙으로 규정한다.

제6조(이용순위)

- ① 인터넷 예약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며 잔여팀은 해당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 ② 1팀은 3~4인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2인으로 한다.(당일 현장상황에 따라 1~2인은 조인될수 있으며, 1인은 입장이 취소될 수 있다.)
- ③ 1인이나 5인 이상은 플레이를 금지한다.
- ④ 골프장은 사정에 따라 임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3일전에 게시한다.(강설, 폭우 등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당일 휴장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위약의 처리)

- ①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전일·당일을 제외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페널티적용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배상하지 아니한다.
 - 이용일 전일·당일 취소시 팀 이용요금의 20% 적용
-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8조(이용요금)

-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가. 입장료
 - 나. 제세공과금
 - 다.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② 골프장 이용요금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며 이용요금 할인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 골프장 이용요금

구 분	기 간	주 중	토·일·공휴일
Par-3, 9홀	성수기 (3월~11월)	15,000원	20,000원
	비수기 (12월~2월)	10,000원	15,000원
연습장	연중	3,000원/1BOX	

- 나. 이용할인대상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및 국자유공자증, 의사상자증 등 시고시에 따른다
 - 국가 및 시(공단)가 주최하는 행사 경기 및 기타 인천광역시(인천환경공단 이사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이용료 면제
 - 연습장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이용요금은 프런트 또는 기타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월 이용 및 장기 이용요금

- 시 고시에 의거 월 이용 및 장기 이용요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상세 이용요금은 사업추진 시 별도로 고지한다.

제9조 (요금의 환불)

-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 11조 2항에 따라 패널티를 부가하며 경기후 이용취소를 할 수 없다
-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객 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5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5번홀 홀 아웃 이후는 환불 불가한다

제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 ① 이용시간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골프장이 별도로 정하며 현장 상황을 참작하여 정비등의 이유로 일부시간을 운영중지 할 수 있다.
- ② 골프장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명절 연휴로 하며, 월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은 상황에 따라 개관할 수 있다.)
-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본 클럽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 ④ 이용객은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제11조(이용의 거절 및 제한)

- ①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및 부대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예약관련

- 당일 노쇼 및 지각(당일 이용인원 변경 포함), 예약권 양도 양수, 예약자 본인 미입장 및 신분증 미 지참

나. 운영관련

- 폭언 및 욕설, 경기지연(투볼플레이, 레슨 등), 경기능력 부족, 도박성 내기, 시설손상, 고성방가, 경기진행 비협조, 음주, 음식물 반입, 전염병 보균자

다. 복장관련

- 과다노출, 신발(슬리퍼, 쇠징 스파이크, 구두 등)

라. 기타 이용객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② 이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이용제한 기간				비 고
	3개월	6개월	1년	영구	
- 지각 및 이용인원 변경 - 경기진행 비협조(지연플레이 등) - 기타 고시된 골프장 이용수칙 위반	1회		2회	3회	
- 당일노쇼(당일·전일 예약취소 포함) - 신분증미지참 - 도박성내기, 음주골프 - 신병치료 목적에의한 취소(연2회)		1회		2회	
- 양도양수(입장권 거래) - 폭언, 폭력 등				1회	

※ 이용수칙 위반시 페널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7조 2항과 같이 위약금을 지불 할경우 페널티는 미적용 한다(해당일 골프장 운영시간내 위약금 지급)

※ 예약시간 미준수(지각)은 진행직원 안내에 따라 흠점프 하여야 한다.

※ 이용제한에 해당되는 모든 규정은 당일 이용이 거절된다.

제12조(초과이용)

- ① 1라운드는 9홀로 하며 라운드 초과 신청은 현장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9홀 연장으로 제한될수 있다(단 현장예약 제외)
- ② 초과 경기신청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1라운드 종료 후 추가신청은 상황에 따라 이용불가하거나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 (경기원칙의 적용)

- ① 모든 이용객은 “한국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에는 골프장의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

제14조(공중질서 유지)

- ① 모든 이용객은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이용규정을 위반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관련규정에 준하여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개인에 영리(레슨, 이용권 거래 등)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도박성 경기 등 적발시 이용거절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의 훼손책임) 모든 내장객은 제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16조(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

- ① 모든 이용객은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이용객은 골프장의 질서유지와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모든 이용객은 자신의 책임 하에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이용객이 진다.

제17조(준비스윙의 제한)

- ① 이용객은 규정된 장소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이용객은 타 이용객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이 접근시 스윙을 멈춰야한다.

제18조(이용객 안전준칙)

- ① 앞 팀 전원이 다음 홀 티잉그라운드 입장완료 되었을때 티샷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용객은 타자의 전방또는 주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매홀 가이드 판에 표시되어 있는 거리를 확인하여 타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벗어나야 하며 퍼팅 및 어프러치 연습을 해서는 안된다.
- ⑤ 이용객의 타구가 인접 홀로 낙구 되었을 경우 안전에 유의하여 볼을 수거하여 경기중인 홀로 이동하여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오비, 헤저드말뚝이 없을시 낙구된 선상에서 무벌타 드롭 할 수 있다
- ⑥ 한 팀은 동반자 모두가 티샷 확인 후 함께 이동 하여야 한다.
- ⑦ 타구 사고 예방을 위한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는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대피의 의무) 이용객은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①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② 낙뢰가 예상될 때
- ③ 기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20조(배상책임)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bunker,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사고 책임 등)

- ① 경기도중 이용객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 경기진행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경기 도중 골프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진행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불조심) 모든 이용객은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23조(경기중단) 기상악화 등 골프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제3장 휴대물품의 보관관리

제24조(귀중품보관 및 골프채 관리)

- ① 이용객은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는 등 골프장의 별도 보관절차에 따라 프런트에 확인·보관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의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5조(락카의 열쇠관리)

- ① 이용객은 락카룸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퇴장 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락카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골프장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른 제비용(20,000원)은 이용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①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할 수 없다.(연습장 등 전시설 불가)
- ② 음식물은 골프장 안에 반입할 수 없다.(생수 제외)

제27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장 골프장의 면책

제28조(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장 골프장의 책임과 의무

제29조(친절봉사) 골프장은 이용객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과 봉사로서 이용객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도착순 접수 및 질서유지) 골프장은 인터넷예약 우선순위, 잔여팀 도착순 접수순에 의거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순서에 변경시 홈페이지 및 클럽하우스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관리사고예방) 골프장의 이용객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제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

- ①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수칙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골프장 준수사항

1. 골프장 로컬 룰

- 골프코스에서는 금연이며 인화물질은 휴대를 하지 않는다.
- 스윙연습 및 퍼팅연습은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을 하여야 한다.
- Tee shot시 러프의 낙하 볼은 무벌타로 정해진 지역에 드롭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린에서는 퍼터 외 다른 클럽 사용 시 퇴장조치 한다.
- 워터해저드(연못, 수로, 배수구)에 낙하되어진 볼은 1벌타 부과 후 낙하지점과 가까운 코스에서 드롭 후 진행한다.
- 경기자가 볼을 찾기 시작하여 3분이 경과되면 로스트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벌타 부과 후 코스에서 가까운 곳에서 드롭 후 진행한다.
- 수리지 및 잔디 보식 지역은 수리지 표시가 없더라도 수리지로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 거리표시목, 보경로, 지주목, 침하 측정관, 작업도로 등 인공시설물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보며 볼은 벌타 없이 1클럽 이내 홀에 가깝지 않은 지역으로 드롭한다.
- 골프장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 시 퇴장조치 할 수 있다.
- 그 외에 규칙은 대한골프협회 규칙을 준수한다.

2. 코스에서 예의

- 플레이어는 스트로크 또는 연습스윙을 하기에 앞서 클럽으로 다칠만한 가까운 곳 혹은 스트로크나 연습스윙로 볼, 돌, 자갈 나뭇가지 등이 날아서 사람이 다칠 만한 장소에 아무도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플레이어가 볼에 어드레스 하거나 볼을 치고 있는 동안은 누구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볼 또는 홀의 근처나 바로 뒤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플레이어는 지체 없이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나면 플레이어는 즉시 퍼팅그린을 떠나야 한다.
- 다른 플레이어의 퍼팅 선을 밟아서는 안 된다.
- 깃대는 똑바로 제자리에 세워 놓아야 한다.
- 경기지연 또는 결례가 되는 행동으로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골프장 직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한다.

3. 코스에서 보호

- 플레이어는 벙커를 나오기 전에 자기가 만든 구멍이나 발자국을 모두 평평하게 고쳐 놓아야 한다.
- 볼마크(퍼팅그린 위의 볼이 낙하로 인하여 파인 곳) 및 스파이크에 의한 손상부위를 수리하여야 한다.
- 플레이어는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에서 뜯겨진 잔디를 즉시 자리에 놓고 밟아 놓아야 하며 볼로 상처를 입힌 퍼팅 그린을 세심히 수리하여야 한다.

- 한 조의 플레이어가 그 홀의 경기를 마친 후 골프신발의 스파이크에 의한 그 퍼팅 그린위의 손상은 수리하여야 한다.
- 플레이어는 특히 홀에서 볼을 집어 올릴 때 퍼터를 잡음으로서 퍼팅그린을 상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티샷이나 아이언샷을 하고 나서는 항상 디봇(Divot)을 정리 하여 그라운드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수목이나 초화류를 꺾거나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조류나 동물류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4. 플레이어(경기자) 준수 사항

- 경기자만 입장 할 수 있다.
- 1팀은 3~4명 원칙이며, 9홀 규정타수는 27타 이다.
- 클럽은 남성(9번, P, S, 퍼터) 여성은 (8번, 9번, P, S, 퍼터)사용을 권장하며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는 사용할 수 없다.
- 초보자는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플레이 하여야 하며 진행에 방해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제한 할 수 있다.
-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원볼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2볼 플레이 금지)
- 한 클럽 및 한 퍼터로 1인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한클럽 및 한퍼터로 2인플레이 금지)
-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미니백은 사용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잔디 보호를 위하여 고무 스파이크와 운동화만 착용하여야 한다.
- 지정된 티매트에서 샷을 하여야 한다.
- 복장은 정규 골프장 이용 시와 같다.
- 연습 스윙은 앞, 뒤, 좌, 우를 확인 후 하여야 한다.
- 경기 중 손상된 잔디는 잘 복구하여야 한다.
- 경기중 그린의 볼 자국은 잘 수리하고 홀 핀, 벙커 레이커는 사용 후 정위치에 둔다.
- 이용수칙 미준수 및 안내에 불응 할 경우 일정기간 이용제한 할 수 있다.
- 앞팀이 다음홀 티잉그라운드에 전원 도착완료 확인 후 티샷 한다.
-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는 떠들거나 움직여서는 안된다.
- 그린에서 다른 사람의 퍼팅 라인을 밟지 않는다.
- 깃대는 올바른 위치에 똑바로 주의 깊게 꽂아야 한다.
- 경기 진행 요원의 안내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골프연습장 준수사항

- 모든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정숙하여야 한다.
- 동반하신 분의 안전은 이용객의 책임이며 어린이 동반은 삼가야 한다.
(어린이 입장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 할 수 있다.)
- 타석 이외의 장소에서 스윙을 금지하며, 음주 후 골프연습은 금지한다.
- 타석 출입 시는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연습 중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본 골프장에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
-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연습 중 골프지도를 삼가야 한다.
- 골프장비 및 개인물품은 직접 관리하고 분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은 물품 분실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바른 복장을 착용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연습장 코인 이용은 셀프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